

「2024 IBK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IBK기업은행(이하 "IBK") 및 한국성장금융(이하 "성장금융")은 혁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항 목	주요 내용					
위탁운용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운용금액 : 총 2,000억원 이내 					
	(단위: 억원)					
		IBK	IBK혁신성장 2호(모펀드)*	합 계		
	1,000	1,000	2,000			
	* 집합투자업자 : 성장금융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개, 억원)					
	분 야	출자금액	출자비율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선정 운용사수	구성목표
	미래선도	1,000	50%이내	1,000	2	2,000
	전문분야	450	75%이내	250	2	700
				200	1	
	인공지능	150	60%이내	250	1	250
	모빌리티	150	60%이내	250	1	250
	에너지·환경	150	75%이내	200	1	200
	중견도약	550	24%이내	1,150	2	2,300
	합 계	2,000			7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분야 복수 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소정의 심사 결과 및 IBK 및 성장금융의 운용 방침 등에 따라 출자금액, 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 등의 변동 가능 					
운용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제안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미래선도 분야의 경우 M&A,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지원 불가 전문분야 지원시 세부 분야 중 1개를 정하여 신청하며, 운용사가 운용 중인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운용사로 신청 제한 					

위탁운용사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모집 공고 등을 통해 IBK 및 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운용계획 등 종합평가하여 선정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최종선정 <p>* www.ibk.co.kr, www.kgrowth.or.kr</p>
접수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1월 25일(월), 16:00 까지
접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한 내 IBK 및 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원본 서면 제출 및 이메일 제출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 기한내 접수처에 제출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이 후 IBK 및 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추가 자료 제출 및 제안 사항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펀드 결성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말

2. 주목적 투자 대상

분 야	주목적 투자 대상*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출자기관* 출자금액의 1배 이상 중소기업에 투자 * IBK 및 성장금융(IBK 혁신성장펀드 2호) 이하에서 동일 ■ 혁신산업 육성 등 펀드 조성 목적을 감안하여 투자 제안
미래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자율제시(단, 목표결성액 50% 이상 신주** 투자) ※ M&A,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지원 불가
전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인공지능, ②에너지·환경, ③모빌리티 중 한 개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목표결성액의 70% 이상 신주** 투자
중견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공동기준」 및 「신산업 4.0 전략 분야 품목」 관련 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목표결성액의 50% 이상 신주** 투자 또는 정부 선정 「도약 프로그램」 기업에 목표결성액의 30% 이상 신주** 투자

* 분야별 주목적 투자대상 상세 별첨파일 참조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규발행 주식관련채권을 포함)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주요 내용								
투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분야별 출자비율 이내로 제안할 것 								
운 용 보 수	관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분야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 기준 2년 이내는 약정총액, 2년 초과 시 투자 잔액 기준 ▪ 미래선도, 중견도약 분야 <table border="1" data-bbox="478 757 1399 855"> <thead> <tr> <th>(억원)</th> <th>1,000억 이내</th> <th>1,000억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보수율</td> <td>연 1.6% 이내</td> <td>연 1.4% 이내</td> </tr> </tbody> </table> 			(억원)	1,000억 이내	1,000억 초과	보수율	연 1.6% 이내	연 1.4% 이내
	(억원)	1,000억 이내	1,000억 초과							
보수율	연 1.6% 이내	연 1.4% 이내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0% 이내 ▪ 기준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8%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출자자 대비 낮지 아니하여야 함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ch-Up 구조 적용 시 사전에 별도 협의 									
운용사 최소 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 대비 [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공동 운용(Co-GP) 시, 운용사별 약정총액의 최소출자비율 이상 각각 출자할 것 								
존속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2년 이내 연장 가능) 								
투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분야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선도, 중견도약 : 핵심운용인력 최소 [3인] 이상 참여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별 핵심운용인력 최소 [1인] 이상 참여) - 전문분야 : 핵심운용인력 최소 [2인] 이상 참여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별 핵심운용인력 최소 [1인] 이상 참여) ▪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을 대표펀드매니저로 지정할 것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 ▪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보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운용인력 중 1인 이상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 불가 * 공동 운용(Co-GP) 시, 운용사별로 각각 적용 ■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규약) 내 필히 기재 ■ 운용 인력 관련 제안서 작성 요건은 별도 서식을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협업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출자기관 출자금액의 1배 이상 IBK 영업점에 주식증거금 납입 ■ 미래선도 분야는 공동출자기관 출자금액의 1.5배 이상 IBK 신규, 기존 거래 기업에 투자 ■ 공동투자를 위한 프로젝트펀드 조성 시 IBK와 성장금융에 투자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관리보수 우대 방식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출자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는 국내 법인 및 기관투자자, 국외 기업 및 기관 투자자로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 주목적 투자대상이 추가되는 출자기관과 매칭시 사전에 협의 후 지원할 것 ■ 제안 펀드에 IBK 또는 IBK가 출자한 모펀드가 출자자로 포함되는 경우 출자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 감사인 수탁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 및 성장금융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 이상의 회계감사인으로 지정 ■ IBK (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펀드 결성시 협의하여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보고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 운용 등에 대해 IBK 및 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 부담
<p style="text-align: center;">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금액, 보수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이후 최종 결정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 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운용(Co-GP)의 경우 지원사 모두 서류심사 최소 기준 충족하여야 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며, 주요 사항별 IBK 및 성장금융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로 운용 업무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주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 * 단, 제재 내역이 제안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이 적은 제재사항일 경우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IBK의 자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 운용사로 참여 예정인 경우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 또는 최근 3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직원인 경우) 또는 문책경고(임원인 경우)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IBK 및 성장금융이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안한 내용이 IBK 및 성장금융이 공고한 사업목적과 현저히 상이하여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 선정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IBK 및 성장금융과 협의하여 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IBK 및 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3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
-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기타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IBK 및 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4년 9월 30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7.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최종 선정

선정 일정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024. 11.25. 16:00	제안서 접수	방문 및 이메일 모두 접수
2024. 12월	현장실사 및 구술심사	대상자 앞 일정 개별 통보
2024. 12월	최종 선정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접수 및 문의방법

- (접수 방법) 제출서류 원본 각 2부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퀵서비스 제출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기한내 제출 (방문, 이메일 반드시 모두 제출)

이메일 주소 : innovest@ibk.co.kr / innovone@kgrowth.or.kr

*** 반드시 상기 수신자 2인 모두 포함하여 전송**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방문 접수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IBK파이낸스타워), 2층
 - 2024.11.25.(월) 10:00~16:00에 한해 방문 접수처 운영하며, 퀵서비스 제출 건은 접수시한 내 도착한 건만 인정
-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를 제출

* 세부 절차 및 내용 대상자 개별 통보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

* 문의사항 집계,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구 분	내 용	
문의기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혁신금융실)	IBK기업은행 (혁신투자부)
전화번호	02-2090-9129, 9163	02-729-7119, 02-6322-5243 02-2031-5703
E - Mail	innovone@kgrowth.or.kr	innovest@ibk.co.kr

2024. 11. 11.
중소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